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선주원남동 통 순서 조정에 따른 통장 정수 조정(안 별표)

- 현행 : 선주원남동 1통~34통, 40통~53통 (통장 48명)
- 개정 : 선주원남동 1통~48통 (통장 48명)
 - 2020. 7월 선주원남동 35~39통이 송정동으로 편입되어 공백 발생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선주원남동 34통란에 이어 35통~39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선주원남동	35	1	35통 구역일원
	36	1	36통 구역일원
	37	1	37통 구역일원
	38	1	38통 구역일원
	39	1	39통 구역일원

별표 중 선주원남동 49통~53통란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- 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-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- 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- 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박 주 영
	담 당	김 응 종
	담 당 자	최 윤 정 (480-6767)